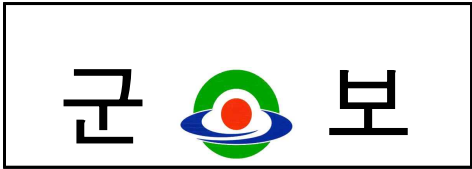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4호 2024. 7. 1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92호)

공 고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4-1156호)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4-115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송평천(지방하천)
점 용 자	(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4층 402호(연지동)
위 치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558-3번지 외 1필지
점용면적 (허가량)	63㎡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사업개요	진출입로 설치 및 배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24년 07월 11일 ~ 2028년 12월 31일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과 불일치 하는 조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노인
복지관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

다.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변경(안 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 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3) 팩스 : 054-650-63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 054-650-6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을 “예천군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예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예천군”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용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있을 때”를 각각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제6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영기간 중”을 “운영기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군에”를 “예천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u>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u>예천군노인복지회관</u>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예천군 노인복지관</u> ----- ----- -----.
제2조(위치) <u>예천군노인복지회관</u>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u>예천군</u> (이하 “군”이라 한다) 예천읍 충효로 209-19에 둔다.	제2조(위치) <u>예천군 노인복지관</u>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u>예천군</u> ----- -----.
제3조(업무) <u>복지회관</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u>복지관</u> ----- -----.
1. <u>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1. <u>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u>	3. <u>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u>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각종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회

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상의 예천군민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 복지

관-----

-----.

② -----

----- 5년 -----
-----.

-----.

제7조(이용료) ① -----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② 제6조-----

----- 이용료-----
-----.

제5조(이용제한)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
장이 있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 3. (생략)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
용) ①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
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

경우 -----
-----.

1. ----- 있
는 경우

2. -----
-- 있는 경우

② -----
----- 사람에 -----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
용) ① ----- 복지관-----

-----.

② ----- 복지관-----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

-----.

1. ----- 운영기간에 -----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
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
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생 략)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
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
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
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

-----.

2. ----- 복지관 -----

----- 예천
군에 -----.

3. (현행과 같음)

4. -----이용료-
복지관-----
-----.

5. -----
-- 따른 -----
-----.

6. ----- 복지관 -----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지도감독) ① -- 관계 공
무원에게 -----

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제11조</u>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
--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예 천



1. 시행규칙명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노인복지관 운영시간 변경(안 제6조)

○ 평일 08:30 ~ 17:30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3) 팩스 : 054-650-63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 054-650-6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중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의 장(이하 “회관의 장”이라 한다)”을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장(이하 “복지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상담지도원”을 “사회복지사”로,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한다.

제4조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탁운영약정 체결)”을 “(위탁운영 약정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대하여 위탁운영 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회관의”를 “복지관의”로, “복지회관운영관련규정집”을 “복지관 운영 관련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기간)”을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8 : 30 ~ 17 : 30까지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장은 식당 및 이·미용실 이용자에 한하여”를 “복지관의 장은”으로, “사용료를”을 “이용료를”로, “사용료의”를 “이용료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할 때에”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상담, 사회교육 등 이용희망자는 내방 상담 후 회원가입 신청

제9조의 제목 “(상담사업)”을 “(상담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능회복사업)”을 “(기능회복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육강하”를 “근육강화”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경우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회교육사업)”을 “(사회교육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위하여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를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지후생사업)”을 “(복지후생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식당, 이·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를 “식당 등을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할 수 있으며”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경로잔치, 호도관광 등을 통해”를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로, “도모에”를 “도모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의탁”을 “복지관의 장은 무의탁”으로, “자질향상에”를 “자질향상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관의 장은 생활·환경 여건”을 “복지관의 장은 생활·환경 여건”으로, “대응하여 주간보호사업, 가정과견봉사업 등”을 “대응하고,”로, “적극 개발하여”를 “개발하여”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복지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비)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자 중에”를 “사람 중에서”로, “있고

임용결과”를 “있고, 임용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원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용 구분	기 본 시 설			
	부 속 시 설 장 비	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		복지관 시설물은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	<u>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u>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 례</u> 」----- ----- -----.
제2조(운영원칙)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8의 규 정에 의거 예천군 <u>노인복지회관</u>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 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 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 ----- ----- <u>노인복지관</u>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 ----- ----- -----.
② <u>복지회관</u> 에서 실시하는 사업 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예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u>인정할</u> 때에는 사업대상자 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u>복지관</u> ----- ----- -----. ----- ----- <u>인정하는 경우</u> ----- -----.

제3조(정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의 장 (이하 “회관의 장”이라 한다) 1명을 비롯한 사무원 1명, 상담지도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 관리인 1명 등 7명의 정원을 둔다.

제4조(직제) 회관의 장은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운영

제3조(정원) -----

----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장
(이하 “복지관의 장”이라 한다)
----- 사회
복지사 -----
조리원 -----
-----.

제4조(직제) 복지관-----

-----.

제5조(위탁운영 약정 체결) ① --
-- 제6조제1항에 따른 -----

--- 대하여 위탁운영 약정----
-----.

<삭 제>

③ ----- 복지관의 -----
----- 복지관 운영

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기간) ① 복지회관의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구 분 시 간 하 절 기 (3월 ~ 10월) 평 일 08 : 00 ~ 18 : 00 토 요 일 08 : 00 ~ 16 : 00 동 절 기 (11월 ~ 2월) 평 일 08 : 30 ~ 17 : 00 토 요 일 08 : 30 ~ 15 : 00

② 복지회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회관의 장은 식당 및 이·미용실 이용자에 한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

관련 규정-----

--.

제6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8 : 30 ~ 17 : 30까지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

---.

제7조(이용료) 복지관의 장은 ---

----- 이용료를

----- 이용료의 -----
-----.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

--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

다.

1.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에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2. 노인공동작업장, 취미오락실
등 이용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3. 재가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
여 신청
4. 노인대학 운영시 입교를 희
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입학 신청

제9조(상담사업) ① 회관의 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
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자는 예천군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
다.

③ (생 략)

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
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회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
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

1. ----- 하는 경
우에는 ----- 별지 --

2. 상담, 사회교육 등 이용희망
자는 내방 상담 후 회원가입
신청

<삭 제>

<삭 제>

제9조(상담 사업) ① 복지관-----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복지관 -----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회복사업) ① 회관의 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 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 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 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는 관할 보건소, 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능회복 사업) ① 복지관

----- 설치·운영한다.

<삭 제>

③ -----

----- 근육강화 -----
-----.

④ -----
----- 경우에 -----
-----.

제11조(사회교육사업) ① 회관의
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
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복지후생사업) ① 회관의
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
당, 이·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장은 노인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취업, 부업, 정보사
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지원사업) ① 회관의
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
활동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
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제11조(사회교육 사업) ① 복지관

위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지후생 사업) ① 복지관

----- 식
당 등을 설치. -----
-----.

② 복지관-----

--- 실시할 수 있으며-----

-----.

제13조(기타 지원사업) ① 복지관

-----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

----- 도모를 위
해 -----.

② 복지관의 장은 무의탁 ----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장은 생활·환경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간 보호사업, 가정과건봉사사업 등 시기와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회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새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① 군수는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수탁법인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회관의 장이 제출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

----- 자질향상을 위해 -----.

③ 복지관의 장은 생활·환경여건----- 대응하고, -----

---- 개발하여 -----.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복지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비)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서에 의한다.

제16조(예산안 제출 등) ① 회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관의 장은 분기별 예산청구와 예산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임용, 보수) ① 회관의 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 임용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예규(사회복지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에 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17조(직원임용, 보수) ① 복지관

----- 사람 중에서 --
--- 있고, 임용 결과-----
-----.

② 직원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